

〔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07년 6월 18일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7년 6월 19일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07년 6월 26일(제1차 총무위원회)
- 마. 의안번호 : 제2006 - 12호

2. 개정이유

2006. 12. 15일 경상남도로부터 금원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권 수탁에 따른 사무를 규정하고, 보건진료소 관할구역을 보건진료소 설치기준에 맞게 확대함으로써 인구구조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강화 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가.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근거조항 수정(안 제1조)
 - 「지방자치법」 제102조 내지 제106조 ⇒ 제112조부터 제120조
- 나. 산림환경과장 분장사무 추가(안 제3조제2항제9호)
 - 금원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다. 보건지소, 진료소 위치변경에 따른 주소변경(안 별표 1)
 - 고제면 보건지소 : 고제면 농산리 200-1번지 ⇒ 754-1번지
 - 강천 보건진료소 : 웅양면 산포리 1418-2번지 ⇒ 1387-36번지

라. 보건진료소 관할구역 확대(안 별표 1)

- 1개 보건진료소 관할구역기준 : 인구 500인 이상
- 14개 보건진료소 관할구역 확대
 - 거기, 강천, 개명, 소정, 월성, 모전, 고학, 울리, 임불, 진목, 지산, 대현, 용암, 중촌

4.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안 상 룡)

- 동 조례안은 2006.12.15 경상남도로부터 금원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권 수탁에 따른 사무를 규정하고, 보건진료소 관할구역을 보건진료소 설치기준에 맞게 확대함으로써 인구구조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 동 조례안의 개정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안 제1조(목적)에서 지방자치법의 적용조문을 개정하려는 사유는 지방자치법 조문이 일부 개정됨에 따른 후속적 조치사항으로써 근거조항을 수정한 것이고
 - 제2조에서 군→거창군으로 표현함으로써 용어를 명확히 하였으며
 - 제3조에서 금원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산림환경과장의 분장사무로 신설하였고,
 - 제5조(설치) 제1항에서 영→『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표현하여 용어를 명확히 하였으며
 - 제8조, 제11조, 제14조, 제17조, 제20조는 지방자치법의 적용조문을 조례에 맞게 수정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 별표 1의 고제면 보건지소와 강천보건진료소의 주소변경은 위치 변경에 따른 것이고,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 변경은 『농어촌 보건의료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하면 보건진료소의 설치는 인구 500인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관할 구역을 재조정하는 것으로 사료되었으며

※ 2007. 2. 13 주례회의시 보고

· 보고내용 :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 확대계획안

-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이 확대되면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 이밖에 기타 상위법령 및 행정절차법 등 관계법령을 살펴 본 결과 별다른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